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1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0.

발 의 자 : 이만희 · 서천호 · 강선영
구자근 · 김상훈 · 김기웅
박덕흠 · 이성권 · 조은희
강명구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정간편식, 글루텐프리, K-Food 인기 등 새로운 국내외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그런데 영세한 개별 쌀가공업체의 역량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쌀가공산업계의 자생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쌀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쌀가공품 자조금 조성·운영이 필요함.

이에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의 목적과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계 자율적인 쌀가공품 홍보,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쌀가공사업자는 쌀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쌀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쌀가공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4. 쌀가공품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쌀가공산업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자조금의 적립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쌀가공품의 소비촉진 홍보, 판로확대, 원료 등의 공동구매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제12조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쌀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쌀가공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쌀가공품의 원료 등의 공동구매 및 쌀가공품의 판매사업
4. 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5.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6. 우수 쌀가공품 원료 사용 촉진사업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쌀가공품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에 다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쌀가공사업자는 쌀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u>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u>1. 쌀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u> <u>2. 쌀가공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u> <u>3. 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교육 등 지원사업</u> <u>4. 쌀가공품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u> <u>5.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u>

<신 설>

<신 설>

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쌀가공산업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자조금의 적립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쌀가공품의 소비촉진 홍보, 판로확대, 원료 등의 공동구매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제12조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쌀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신 설>

홍보사업

2. 쌀가공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쌀가공품의 원료 등의 공동구
매 및 쌀가공품의 판매사업

4. 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5.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6. 우수 쌀가공품 원료 사용 촉진
사업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제12
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
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
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2.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생
산하는 쌀가공품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
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
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
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
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
액(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이 납
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
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
의 운영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